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권영진·조승환·김상훈

주진우 · 엄태영 · 윤한홍

조경태・김 건・강명구
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(이하 특화단지)를 지정할 수 있고, 최근 제정된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특별법」 및 「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(종전부지)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.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,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및 시·도지사까지 확대하고,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·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

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(안 제3조의3),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(안 제4조 및 안 제8조),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·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(안 제23조).

나.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까지 확대하고,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(안 제29조).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 본문 중 "국가시범도시"를 "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"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1호 중 "국가시범도시"를 "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특화단지"로 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(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)

제23조제1항제6호 중 "국가시범도시"를 "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"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"으로, "스마트도시 특화단지"를 "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특화단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은"을 "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③ 제37조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, 제42조, 제42조의2, 제42조의3,

제43조,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	제3조의3(다른 법률과의 관계)
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	
업진흥, <u>국가시범도시</u> 의 지정·	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
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	도시 특화단지
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	
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	
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	
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	
따른다.	.
제4조(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	제4조(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
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	립 등) ①
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	
관리・운영 등(이하"스마트도	
시건설등"이라 한다)을 위하여	
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	
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	
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	
수립하여야 한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<u>국가시범도시</u> 의 지정・운영	11.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
에 관한 사항	<u>시 특화단지</u>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
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
 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
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
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
 할 수 있다. 다만, 관할 구역에
 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
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
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
 한다.
- 1. ~ 9. (생 략) <신 설>

- 10. (생략)
- ② ~ ⑦ (생 략)
- 제23조(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)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 트도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~ 5. (생략)
 - 6. 국<u>가시범도시</u>의 지정·해제

제8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능)
①
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
운영에 관한 사항(스마트도시
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
<u> 정한다)</u>
10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) ①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

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. ~ 12. (생 략)

- ② ~ ⑤ (생 략)
- 제29조(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 정 및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는 스마트도시의 조성, 관리· 운영,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은</u>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 지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 다.

<신 설>

<u>특화단지</u>
7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
정 및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
및 시·도지사는
위원회의 심의
<u>기천되기 교기</u> 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-
<u> </u>
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・도지
<u>사는</u>
,
③ 제37조, 제39조, 제40조, 제4
1조, 제42조, 제42조의2, 제42조
의3, 제43조, 제44조 및 제45조
의 규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
에 준용한다.